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2

발의연월일: 2020. 6. 10.

발 의 자: 안규백·유동수·김민기

윤후덕 · 김교흥 · 강선우

김진표 • 민홍철 • 도종환

박 정 • 고용진 • 이인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주택군인에게 자가보유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"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"에게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"규제합리화를 통한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"(2014. 9. 1.) 시행 이후 대부분의 공공택지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라 공급되고 있는실정임.

이에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,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).

법률 제 호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"를 "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주택의 우선공급 등) ①	제10조(주택의 우선공급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7조	②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7조
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	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
<u>자</u> 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	자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
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	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
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	
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	
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	
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